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0089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10228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00894 판결

전 문

원 고 A 단체

피 고 대미특봉심회

변론 종결 2016. 12. 21

판결 선고 2017. 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아산시 B 임야 19,834㎡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82304호로 한 대미륙봉심회의 2-1번과 2-2번 각 등기명 의 인표시 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단체은 2004. 6. 12. 충남 아산시 B 임야 19,8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82304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2011. 5. 19. 주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26. 접수 제33191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D은 원고를 대표할권한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5호증,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내지 12, 갑 제2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와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종전 C단체과 동일성을 유지한 단체라거나 그밖에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갖춘 단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판결등 참조),갑 제18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외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성원들의 총회 결의를 거쳤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애정